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분해를 통한 폐합성수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
제10조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제10호의4 및 제10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임시보관장소(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선별·절단하는 경우(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및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
한한다)

제15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
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질·상태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지 및”을 “폐지,”로 하고, “같다)은”을 “같다), 왕겨 및 쌀겨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철”을 “고철, 왕겨 및 쌀겨”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열분해시설

제41조제5항제1호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마다 교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제2호”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1년마다 재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로,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바.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연도”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로 한다.

제6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4 제2호의 51-17-06에서 “피혁가공잔재물”을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로 하고, 같은 호 51-17-24란 다음에 51-17-25란과 51-17-2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17-25 커피박

51-17-26 페버섯배지

별표 4 제2호의 51-19-00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19-00 왕겨 및 쌀겨(「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관리되는 쌀겨는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의 51-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폐목재(연료용 또는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 간벌,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부산물은 제외한다)

51-2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

51-20-03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51-20-13 폐받침목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별표 4 제3호의 91-17-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박

91-17-02 폐버섯배지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별표 4의2 제2호가목3) 중 “증발·농축 등의”를 “증발·농축, 증류·추출, 열분해 등의”로 하고, 같은 3) 중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의”를 “합성수지, 섬유, 고무제품,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로 하며, 같은 목 4) 중 “증발·농축 등의”를 “증발·농축, 열분해 등의”로

하고, 같은 4) 중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를 “합성수지, 섬유, 고무제품,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이외의”로 하며, 같은 표 제5 호나목3) 중 “기체”를 “기체(수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4의3 제1호 06-01-01 및 06-03-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6”을 각각 “R-3-3, R-4-6”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 51-03-01, 51-03-02, 51-03-06, 51-03-07, 51-03-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각각 “R-3-3, R-3-4”로 하고, 같은 호 51-08-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2”를 “R-4-2, R-7-1, R-7-3”으로 하며, 51-15-01 및 51-15-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각각 “R-3-3, R-3-4”로 하고, 같은 호 51-17-06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17-06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	R-1-1, R-2-1, R-2-2, R-3-4, R-4-8,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R-10	해당

별표 4의3 제2호에 51-17-25 및 51-17-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17-25	커피박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4-5, R-5-1, R-5-2, R-5-4, R-6-1, R-8-2, R-9-5, R-10	해당
51-17-26	페버섯배지	R-5-3, R-9-1, R-9-3, R-9-4, R-10	해당 없음
		R-5-1, R-5-2, R-5-4,	해당

		R-6-1, R-8-2, R-9-5, R-10	
--	--	------------------------------	--

별표 4의3 제2호에 51-2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51-38-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4-9, R-5-3, R-9-4, R-10”을 “R-3-3, R-4-9, R-5-3, R-9-3, R-9-4, R-10”으로 하며, 같은 호 51-3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5-3”을 “R-5-3, R-9-3”으로 한다.

51-20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폐목재(연료용 또는 목재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 간벌, 숲가꾸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임목부산물은 제외한다)	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	해당
51-2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03	할로젠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	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13	폐받침목	R-1-2, R-2-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	해당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	해당

별표 4의3 제3호 91-02-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6-1, R-9-4”를 “R-6

-1, R-9-3, R-9-4”로 하고, 같은 호 91-06-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2-2, R-3-3, R-3-4”로 하며, 같은 호 91-06-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하고, 같은 호 91-08-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로 하며, 같은 호 91-17-0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91-18-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3-3”을 “R-3-3, R-3-4”로 한다.

91-17	식물성 잔재물		
91-17-01	커피박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4-5, R-8-2, R-9-1, R-9-5, R-10	해당
91-17-02	페버섯배지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8-2, R-9-1, R-9-5, R-10	해당
91-17-03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	R-4-8, R-5-1, R-5-2, R-5-4, R-9-4, R-10	해당 없음
		R-4-5, R-8-2, R-9-1, R-10	해당

별표 5 제1호나목2)나)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폐기물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0의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그 밖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점검 기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1)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차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수집·운반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별표 5 제6호나목2)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다)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별표 5 제6호나목2)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별표 5
제6호나목2)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1) 제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2)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되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나)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라) 제6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선별·압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재활용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별표 5 제6호바목에 5)와 6)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가목4)에 따른 경우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영업용만 해당한다)

6) 사목3)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5 제6호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R-3-3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한다)를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재활용 대상 폐지·고철 또는 폐포장재 외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리·제거해야 한다.

(나)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락카·폐농약·폐유독물질·폐석면·폐폴리염화비닐(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 또는 유해유발물질이 혼합되거나 이를 담았던 용기가 혼합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제거해야

한다.

(다) 폐지 또는 고철을 종이·판지, 포장용 완충재, 금속 또는 금속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다음의 이물질(폐지 또는 고철 외의 물질로서 원료로 적합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말하며, 수분은 제외한다)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준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폐지 또는 고철을 공급받는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 ①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퍼센트) 이하
- ② 폐지를 종이·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 ㉠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 ㉡ ㉠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5

퍼센트 이하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에 (2), (3) 및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열분해하여 생산한 열분해유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0.15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

(다) 회분[灰分: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무게비율로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 무게비율로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3) 폐합성수지류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 선별, 투입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원료의 오염물질을 최소화 해야한다. 이 경우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투입원료 기준 및 재생원료

품질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 폐윤활유 또는 그 밖의 폐유를 정제하여 윤활기유의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원료물질은 같은 호 마목
2)가)(2)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활기유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추가적인 불순물 정제 처리(용제추출법 등)
를 한 후 해당 원료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1)라) 중 “재활용된”을 “(1) 재활용된”으로 하고,
같은 라)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을 가스화하여 합성가스
(일산화탄소, 수소 등)를 만들어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합성가스의 질소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산소를 사용해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폐기물”로, “발효 등의 분해과정”을 “분리, 혼합, 발효 등의 과정”으로
하고, 같은 (4)의 (가)부터 (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유물질(SS) 5,000mg/L 이하

(나) 노르말헥산(N-Hexan) 1,000mg/L 이하

(다) 총질소(T-N) 1,000mg/L 이하

(라) 총인 400mg/L 이하

(마)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20,000mg/L 이상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의 (3)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가)(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 폐주물사, 무기성오니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이하 “혼합물”이라 한다)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의 경우 75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가)의 (6)을 (7)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는 나목2)가)(5)(나)의 기준(염소화합물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할 수 있다.

별표 5의3 제2호라목1)다)(1)(가)의 단서 중 “가)(6)의”를 “가)(7)의”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2)의 본문 중 “유기성 오니의”를 “유기성 오니,

커피박 및 폐버섯배지의”로 하고, 같은 다) (3)의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커피박과 폐버섯배지는 서로 혼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다) (4)의 (가) 중 “사용하되,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다) (6)의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유기성 오니는”을 “유기성 오니, 커피박 및 폐버섯배지는”으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나목6) 중 “이내”를 “이내(별표 4의2 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6 제1호나목1) 비고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와”를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폭발성 분석을”을 삭제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특성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별표 6 제4호나목 중 “계량시설 인근에”를 “계량시설과 진입로에”로 한다.

별표 7 제2호다목1)나) 중 “1톤”을 “2톤”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는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통과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진입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별표 8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불연물은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별표 9 제1호나목2)다)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열분해시설”을 “열분해 소각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3) 중 “시멘트·아스팔트”를 “시멘트·아스팔트·우레탄·에폭시”로 한다.

별표 9 제3호가목에 7)부터 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바닥면에서 고이지 아니하도록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보관시설의 경우에 한정하며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이 되도록 한다. 또한 배수로 및 배수로를 통해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차집되는 집수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9)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은 플라스틱 재질을 광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 규모별 장치 설치 개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제3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

- 가)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열분해실·응축설비·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이하 “연소실”이라 한다) 또는 배기가스 처리설비·유류저장설비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연소실·열분해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여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마) 연소실·열분해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 측정계를 설치해야 한다.
- 바) 연소실·열분해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 사)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실 내부로의 외부 공기유입을 차단하고 반응온도 및 압력(가압 또는 감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

다)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여야 한다.

아)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고형잔재물의 제거 시 재의 흠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회수된 열분해유의 중량은 초기 투입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가스화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차) 시설규모, 처분대상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별표 10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열분해시설

구 분	검 사 항 목
설치검사	○ 열분해(가스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능력의 적절성 및 적절열 분해상태 유지 여부 ○ 열분해유 회수량 적절 여부 ○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 고형잔재물의 흠날림 방지조치 여부

	○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 적절 열분해상태 유지 여부 ○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 열분해유 회수량 ○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별표 11 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운영자는 실내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 등(실내만 해당한다)을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출 후 12시간 내에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청소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가)(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시설에서 처분이 가능한 폐기물(건설현장이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를 말한다)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나)(3)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열분해시설”을 “열분해 소각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열분해시설

- (1)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실 내부로의 기밀성을 점검 관리하고, 반응온도 및 반응압력(가압 또는 감압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2) 회수된 열분해유의 중량이 초기 투입폐 기물 중량의 50 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가스화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열분해유의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별표 14 나목의 자격기준란 중 “전기공사기사”를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1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 가.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 나.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별표 16 제13호의 가목, 나목, 다목을 나목, 다목, 라목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가목을 신설한다.

- 가.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별표 16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폐기물에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가. 폐현수막을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장바구니, 마대,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

나. 폐섬유, 폐의류, 폐원단을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의복, 침구,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

다.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가방, 신발, 문구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

별표 21 제1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제2호나목7)과 제2호다목8)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1 제2호다목의 21)제2호다목가) 및 21)제2호다목나)를 각각 21)제

2호다목나) 및 21)제2호다목다)로 하고, 같은 목에 21)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설현장이나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 과정에 서 발생한 폐기물의 소 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	-------------	-------------

별지 제27호 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 각 시 설		
☐ 소각열회수시설	☐ 설치	
☐ 멸균분쇄시설		검사신청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정기	
☐ 시멘트 소성로		
☐ 열분해시설		

별지 제31호 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 각 시 설		
☐ 소각열회수시설	☐ 설치	
☐ 멸균분쇄시설		검사결과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정기	
☐ 시멘트 소성로		
☐ 열분해시설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목란 중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기타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기타 소각시설
열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별지 제49호 서식 앞쪽의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구분	㉡ 종류 (분류번호)	㉢ 총 발생량 (톤/년)	㉣ 성질 ·상태	㉤ 자가처리		㉥ 위탁처리				㉦ 보관량 (톤/년)		㉧ 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톤/년)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별지 제49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⑭란의 ㉠란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의 ㉣란 및 ⑮란의 ㉣란은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7. ⑭란의 ㉤란 및 ㉥란 중 방법란과 ⑮란의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8. ⑭란의 ㉥란 중 구분란은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별지 제49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⑮란에서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합니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하는 폐기물

별지 제51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⑨란 및 ⑩란에서 “잔재물”이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별지 제52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⑨란부터 ⑰란에서 “잔재물”이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제3
호나목4)의 개정규정,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의 개정규정, 별표 9
제3호가목7) 및 같은 목 8) 본문의 개정규정과 별표 16 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별표 9 제3호가목8)의 단서 및 9)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3 제2호다목 및 별표 16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서 계속 음식물류폐기물
을 가축 먹이로 생산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 당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폐
기물 처리 담당자 등으로서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제5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 경과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제5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
야 한다.

제4조(유기탄소원 제조 또는 재활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기탄소원을 제조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
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
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별표 9 제3호가목7) 단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생략)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66조제6항제10호에 따른 1회 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u>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10의2. (생략) <u><신설></u>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 ----- ----- ----- -----. 1.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u>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임시 보관장소(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면, 벽면, 지붕

10의3. · 10의4. (생략)

11. (생략)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7.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생략)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선별·절단하는 경우(영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및 제3호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 한한다)

10의4. · 10의5. (현행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와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

-. ----- 고철, 왕겨 및 쌀겨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 바. (생략)

<신설>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③ ~ ④ (생략)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열분해시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계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 5.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

1. -----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

2.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 다. (생략)

2. ~ 4. (생략)

⑧ ~ ⑪ (생략)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 라. (생략)

마.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1. -----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 --- 제2호----- 1년마다 재교육---

1. -----

----- 제외한다),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후단 삭제>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바.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2.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u>처분을 받은 경우</u> 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 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 ----- -----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

① ~ ⑤ (생 략)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9. (생 략) <u><신 설></u>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9. (현행과 같음) 10. <u>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u>
--	--